

「개인보증시행세칙」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

- 「개인보증시행세칙」

2. 제 · 개정 이유

-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개인보증 상품성 강화

3. 주요 제 · 개정내용

- 서민 · 취약계층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신설 등
- 보증자리론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(MCG) 도입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 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(문현동)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
- 담당자(이메일) : 최혁신 팀장(sini@hf.go.kr), 박경원 과장(1564@hf.go.kr)
- 전화번호 : 051)663-8424, 팩스번호 : 0505-036-0549